



TOMÁS J. ARAGÓN, M.D., Dr.P.H.
Director & State Public Health Officer

캘리포니아주—보건복지부
California Department of Public Health



GAVIN NEWSOM
Governor

2023년 7월 12일

수신:

모든 캘리포니아 고용주

제목:

고용주를 위한 직장 내 코로나-19 대응

관련 자료: [직원 및 직장 지침 더 보기](#) | [모든 지침 보기](#) | [더 많은 언어로 보기](#)

2023년 7월 12일 현재 업데이트:

- Cal/OSHA 코로나-19 예방 비용급 규정과 관련된 새로운 리소스입니다.
- 발병 보고 및 지침에 대한 참조를 업데이트했습니다.
-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권장 사항 및 링크를 업데이트했습니다.

직장 내 코로나-19 대응

고용주는 코로나-19로부터 직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이 리소스 문서는 고용주가 코로나-19의 확산을 예방하고 직장에서 확인된 코로나-19 확진 사례 및 발병에 신속하고 절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.

캘리포니아 공중보건국/공보실
P.O. Box 997377 • MS 0502 • Sacramento, CA 95899-7377
(916) 440-7259 • (916) 440-7505 FAX
www.cdph.ca.gov



지역 보건국 (LHD)은 특정 고위험 환경 또는 특정 상황(예: 고위험 환경에서 발병이 진행되는 동안)을 포함하여 지역 상황을 기반으로 주 전체 지침보다 더 엄격한 추가 요건을 계속 시행할 수 있습니다.

법적 및 규제 요건

고용주가 코로나-19 직장내 발병 시 주 전역에 이를 통보해야 했던 이전의 요건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. 그러나 LHD는 지역 명령을 통해 발병 보고를 계속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고용주는 [코로나-19 직장 발병 보고 지침](#)에 설명된 대로 직장 내 코로나-19 확진 사례 또는 발병과 관련하여 LHD가 요청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.

비의료 직장의 경우, 고용주는 직원 보호 조치가 [Cal/OSHA 코로나-19 예방 비응급 규정](#) (코로나-19 예방 규정)을 준수하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.

고용주는 규정 문구, [자주 묻는 질문](#) 및 [코로나-19 예방 규정 웹페이지](#)에 있는 기타 자료를 참조해야 합니다. 이 리소스 가이드는 Cal/OSHA 규정의 포괄적인 요건을 다시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.

또한 이 리소스 가이드는 의료, 교정, 보호소 또는 Cal/OSHA의 [에어로졸 전염성 질병 \(ATD\) 기준 \(타이틀 8, 섹션 5199\)](#)이 적용되는 기타 직장 환경에서 발병을 관리하거나 예방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.

직장 발병 관리의 핵심 구성 요소

1. 직장내 코로나-19 확진 사례 파악 및 관리를 위한 준비.

- [LHD 연락처 정보](#) 및 직장이 위치한 관할 구역의 LHD에 대한 해당 보고 요건을 파악합니다.
- 직장 내 질병 관리 및 예방 코디네이터를 지정하여 코로나-19 감염 예방 절차를 이행하고 직원들의 코로나-19 관련 문제를 관리하도록 지원합니다.
- Cal/OSHA [코로나-19 예방 규정](#)의 요건에 부합하는 코로나-19 예방 절차를 위한 서면 직장 상해 및 질병 예방 프로그램(IIPP)을 개발합니다. Cal/OSHA는 모델 코로나-19 예방 비응급 [템플릿](#)을 [코로나-19 예방 비응급 규정 웹페이지](#)에서 제공합니다.
- 직원들에게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코로나-19 직장 내 위험 가능성을 고용주에게 보고하도록 요청합니다.
- 직원이 코로나-19 감염 판정을 받으면 집에 머물고 고용주에게 보고하도록 권장합니다.
 - 직원들이 [산재 보상, 주 장애보험](#) 또는 자격이 될 수 있는 기타 휴가 혜택에 대해 알고 있는지 확인합니다.
- 모든 직원들에게 [코로나-19 백신 접종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도록 권장합니다](#). 백신 접종은 코로나-19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입니다.

2. LHD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정보 공유.

- 직장이 위치한 관할 구역의 LHD 는 특정 발병 보고 요건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. 고용주는 이러한 요건을 준수하고 LHD 가 요청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. 특정 발병 보고 요건이 없는 경우, 고용주는 필요에 따라 [LHD](#) 에 연락하여 확진 사례 및 발병에 대한 지침에 대해 문의할 것을 권장합니다.
- 시설에서 계약직 또는 임시직 직원을 사용하는 경우, 직원과 고용주에게 발병 관련 정보 및 지침을 전달할 담당자를 지정합니다.
- Cal/OSHA의 [코로나-19 확진 사례에 대한 기록 및 보고 요건](#) 을 참조하세요.

3. 추가 직원 확진 사례 및 밀접 접촉 파악.

- 직원이 코로나-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, 고용주는 해당 직원이 감염 기간 동안 직장에 있었는지 확인하고 밀접 접촉자를 파악해야 합니다. 고용주는 감염 기간 및 밀접 접촉의 정의에 대해 [Cal/OSHA 코로나-19 예방 규정](#) 및 [주 공중보건 담당관 명령](#) 을 참조해야 합니다.
 - 코로나-19 양성 판정을 받은 자가 직장에 있었던 시기를 평가하고 밀접 접촉자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, 고용주는 전화로 코로나-19에 감염된 직원을 인터뷰할 수 있습니다. 이 정보를 얻기 위해 고용 기록을 참조할 수도 있습니다.
 - 밀접 접촉자는 노출 후 10일 동안 잘 맞는 마스크 착용, 마지막 노출 후 3-5일 이내에 검사 그리고 집에 머물고 [증상이 나타나면 다시 검사를 받으라는](#) 권장 사항을 포함하여 캘리포니아 공중보건국 ([CDPH](#)) [격리 및 예방격리 지침](#) 을 따라야 합니다.
- [직장 발병](#) 이 확인되면,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직원을 검사하는 것이 추가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고용주가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하는 전략 중 하나입니다.
 - LHD는 검사 전략 논의를 위한 상담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검사 옵션을 용이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.
 - 노출된 직원의 검사 요건 및 구체적인 업무 복귀 기준은 Cal/OSHA [코로나-19 예방 규정](#) 을 참조하세요.
 - 검사는 특정 시점에 있어서의 한 개인의 건강 상태를 반영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. 직원이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더라도, 그 직원은 최근 또는 후속 노출로 인해 여전히 코로나-19 감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증상이 나타나면 [CDPH의 격리 및 예방격리 지침](#) 에 있는 권장 사항대로 검사를 반복합니다.

4. 직원에 대한 통지 및 지침 제공.

- 직장에서 코로나-19에 감염된 개인이 파악되면, 고용주는 직장에서 코로나-19 노출에 대한 통지를 게시해야 합니다. 통지 요건에 대한 추가 정보는 [노동법 6409.6](#) 및 [Cal/OSHA 코로나-19 예방 규정](#) 을 참조하세요.

5. 코로나-19 감염 직원의 적절한 업무 복귀 시기 결정

- 고용주는 코로나-19 양성 판정을 받은 직원의 업무 복귀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가장 최근의 [Cal/OSHA 요건](#) 및 [CDPH 격리 및 예방격리 지침](#) 을 검토해야 합니다.
 - 업무 배제 기간은 개인의 증상과 검사 결과에 따라 다릅니다.
- LHD는 추가적인 업무 복귀 요건을 부과할 수 있으며, 고용주는 이러한 요건과 관련하여 직장이 위치한 관할 구역의 [LHD](#) 와 상의해야 합니다.

6. 직장 내 코로나-19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강구.

- 마스크의 품질을 평가하는 방법과 마스크와 호흡보호구의 차이점을 이해하려면 [CDPH 마스크 최대한 활용하기](#) 지침을 참조하세요.
 - 고용주는 착용감과 여과성이 좋은 마스크를 제공해야 합니다.
 - 고밀도 직장이나 직장 내 발병 등 고위험 상황 또는 지역사회 내 많은 사람이 현재 코로나-19에 감염되어 다른 사람에게 전염 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, 고용주는 직원에게NIOSH 승인N95 호흡보호구를 제공하는 것 **강력히** 고려해야 합니다.
- 직원에게 마스크 또는 호흡보호구가 필요한 경우와 추가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를 이해하려면 Cal/OSHA [코로나-19 예방 규정](#) 을 참조하세요.
- 직장 환기 개선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[Cal/OSHA 코로나-19 예방 규정](#) 및 [CDPH 실내 환경의 환기, 여과 및 공기의 질에 대한 임시 지침](#) 을 참조하세요.

추가 CDPH 리소스

- [산업보건과 코로나 19 및 직장](#)
- [AB 685 지역 공중보건국을 위한 코로나-19 직장 내 발병 보고 요건](#)
- [실내 환경의 환기, 여과 및 공기의 질에 대한 임시 지침](#)
 - [코로나-19 및 실내 공기의 질 환기 팁](#)
- [안면 마스크 팁 및 리소스](#)
- [일반 대중의 격리 및 예방격리에 관한 지역 보건 관할 구역 지침](#)
 - [격리 및 예방격리 지침 질문 및 답변](#)

추가 Cal/OSHA 리소스

- [Cal/OSHA 코로나-19 웹페이지](#)
 - [코로나-19 예방 비응급 규정, 리소스 및 자주 묻는 질문](#)
 - [코로나-19 확진 사례 보고 및 기록 요건](#)

2020년 6월 16일에 최초 게시